의안 번호	983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안 일 자 : 2013. 05. 07.(화)
나. 제 안 자 : 서경환의원 외 5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3. 05. 09.(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3. 05. 15.(수)

2. 제안이유

○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의 자녀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안 제2조)
나.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매 학년마다 선정 추천(안 제3조)
다. 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선발(안 제5조)
라.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안 제6조)
마.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는 퇴학, 정학, 장학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안 제8조)
바. 장학금 지급업무의 효율성과 항구성을 위해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안 제 9조)

3. 관련법규

가. 「지방재정법」 제41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18호)

별표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5. 검토의견

○ 구·군 형평성과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하는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통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젊은 층의 통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